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서

2022. 10. 7.

교섭대표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대한적십자사

제 정 2000. 5.29.
 개 정 2001. 7. 9.
 개 정 2002. 9. 1.
 개 정 2003. 7.15.
 개 정 2004. 8.17.
 개 정 2006.11. 7.
 개 정 2007.12. 1.
 개 정 2008. 9.22.
 개 정 2009. 2.12.
 개 정 2010.12.14.
 개 정 2012. 2. 3.
 개 정 2013. 3.18.
 개 정 2014. 9.18.
 개 정 2015. 6.17.
 개 정 2016. 6.28.
 개 정 2017.11. 2.
 개 정 2018.12.19.
 개 정 2019.12.12.
 개 정 2020.11.30.
 개 정 2021.10.21.
 개 정 2022.10. 7.



전 문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이하 “교섭대표조합”이라 한다)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기본정신과 적십자인도주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십자사의 민주적 자율적 발전을 기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뢰와 성실로서 이를 준수,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참여조합과 적십자사의 자주성을 인정, 존중하고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상호 민주적 노사관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교섭단체) 적십자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노동조합, 대한적십자사본사노동조합, 전국적십자사기관노동조합, 인천적십자혈액원노동조합,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노동조합, 대한적십자사전북혈액원노동조합,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노동조합(이하 “참여조합”이라 한다)이 조합원의 권익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개정 2021.10.21.)

제3조(협약의 우선적 효력) 본 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관하여 적십자사가 정한 취업규칙과 제규정에 우선하며 적십자사와 참여조합간의 합의한 제반사항이 본 협약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의2(적용범위) 본 협약은 참여조합 및 그 조합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 3.18.)

제4조(근로조건 저하 금지)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한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적십자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제정 및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반수 조합과 성실히 협의한다. 다만,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조합의 합의를 구한다.

제7조(협약준수의무) 참여조합과 적십자사는 쌍방이 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유대를 항상 유지할 등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제8조(상호통지) 적십자사와 참여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 문서 또는 유선으로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적십자사가 통지할 사항

1.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의 개폐
2. 적십자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 등의 계획서와 그 결과
3.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시 일시, 안건 등에 대한 사전통보 및 결과통보
4. 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퇴직 등 인사 및 상벌 관련 그 결과

② 참여조합이 통지할 사항

1. 규약의 변경
2. 조직의 변동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9조(조합활동의 보장) 적십자사는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10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적십자사는 다음과 같은 조합활동을 실시할 경우 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게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개정 2021.10.21.)

1.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 ① 정기총회 총 2회(본부지부 1회, 지부 1회)(개정 2017.11. 2.)
- ② 임시총회 총 3회(지부 3회)(개정 2017.11. 2.)
- ③ 대의원대회 총 6회(본조 2회, 본부지부 2회, 지부 2회)
- ④ 회계감사 총 2회
- ⑤ 대책회의 총 4회(지부 4회)(개정 2017.11. 2.)
- ⑥ 지부장회의 총 24회(개정 2017.11. 2.)
- ⑦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 ① 정기총회 총 1회
- ② 임시총회 총 2회
- ③ 대의원대회 총 4회



- ④ 회계감사 총 2회
 - ⑤ 상무집행위원회 총 2회
 - ⑥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3.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노동조합

- ① 정기총회 총 1회
- ② 임시총회 총 2회
- ③ 대의원대회 총 4회
- ④ 회계감사 총 2회
- ⑤ 집행위원회 총 2회
- ⑥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4. 대한적십자사본사노동조합

- ① 정기총회 총 1회
- ② 임시총회 총 2회
- ③ 대의원대회 총 4회
- ④ 회계감사 총 2회
- ⑤ 상무집행위원회 총 2회
- ⑥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5. 전국적십자사기관노동조합

- ① 정기총회 총 1회
- ② 임시총회 총 2회
- ③ 대의원대회 총 4회
- ④ 회계감사 총 2회
- ⑤ 상무집행위원회 총 2회
- ⑥ 지부장회의(운영위원회) 총 12회

6. 인천적십자혈액원노동조합

- ① 정기총회 총 1회
- ② 임시총회 총 2회
- ③ 대의원대회 총 4회
- ④ 회계감사 총 2회
- ⑤ 집행회의 총 2회
- ⑥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7.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노동조합(신설 2019.12.12.)

- ① 정기총회 총 1회



- ② 임시총회 총 2회
- ③ 대의원대회 총 4회
- ④ 회계감사 총 2회
- ⑤ 집행위원회 총 2회
- ⑥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8. 대한적십자사전북혈액원노동조합(신설 2019.12.12.)

- ① 정기총회 총 1회
- ② 임시총회 총 2회
- ③ 대의원대회 총 4회
- ④ 회계감사 총 2회
- ⑤ 상무집행위원회 총 2회
- ⑥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9.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노동조합(신설 2021.10.21.)

- ① 정기총회 총 1회
- ② 임시총회 총 2회
- ③ 대의원대회 총 4회
- ④ 회계감사 총 2회
- ⑤ 집행위원회 총 2회
- ⑥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11조(유급근로시간면제) ① 적십자사는 참여조합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범위(연간 12,000시간)내에서 유급근로시간면제자 12명(무급전임자 3명은 별도)을 인정한다. 다만, 면제자의 시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합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6. 6.28.)

-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타임오프 특례조항 결정시 재논의한다. (신설 2010.12.14.)

제12조(조합원의 상급단체 취임 인정) ① 적십자사는 조합원이 조합 및 상급단체의 직책에 취임함을 인정한다.

-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전임으로 취임하는 경우 추가 전임을 인정한다.
- ③ 조합 및 상급단체에서 전임하는 자의 임금은 사안 발생 시 추후 협의한다.
- ④ 조합 및 상급단체에 취임한 자가 복귀하였을 때는 그 동안의 경력을 인정한다.

제13조(유급근로시간면제자 및 무급전임자의 처우) ① 적십자사는 유급근로시간면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개정 2012. 2. 3.)

② 유급근로시간면제자는 신분해체와 동시에 원직에 즉시 복귀시키며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한 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개정 2010.12.14.)

③ 유급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승진, 임금인상, 호봉승급, 각종 수당은 같은 직종에 있어서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또한 차후 실시되는 모든 수당혜택에 있어서도 동 직종에 근무하는 자와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개정 2010.12.14.)

제14조(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① 적십자사는 참여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 조건에 관한 사항, 인사 관련 일반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경영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조합은 적십자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한다.

② 적십자사는 감사와 시정조치 경고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편의 제공) ① 적십자사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컴퓨터, 집기, 비품, 통신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② 참여조합이 회의·교육·행사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 시설과 차량 및 장소의 사용이 필요할 때는 적십자사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4. 8.17.)

③ 본부지부 전임자의 사무실은 지부 전임자가 소속된 기관에 임시로 두며, 필요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제15조의2(조합비 공제) 적십자사는 임금지급일에 조합비를 공제하여 참여조합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3. 3.18.)

제16조(홍보활동의 보장) 적십자사는 적절한 장소에 참여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 및 현수막 부착을 인정하며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배포를 인정한다.

제17조(조합소개) ① 적십자사는 신규직원에게 대해 정규임용 후 1월내에 기관별로 조합임원 및 간부가 참여조합을 소개할 수 있도록 2시간 제공한다.(개정 2002. 9. 1.)

② 적십자사는 신규직원의 교육원 기초과정교육 시 노사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목을 신설한다.(신설 2001. 7. 9.)

③ 제2항의 교육과목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기간 및 강사는 과반수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다.(신설 2001. 7. 9.)

제18조(조합원 교육시간) ① 적십자는 조합원에게 연간 1일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참여조합에 유급으로 부여한다.(개정 2017.11. 2.)

② 적십자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초급관리자과정 및 중급관리자과정의 교육시간을 각 사업기관의 실정과 인력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신설 2001. 7. 9.)



제 3 장 인 사

제19조(인사원칙)

① 조합원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인사원칙에서 차별되지 아니한다.

② 적십자사는 승진 및 승급의 기회가 있을 시 제 규정에 의한 소정의 승진 및 승급 심사절차에 의거 승진 및 승급을 행하며 지체 없이 발령한다.

③ 참여조합별 인사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0.21.)

1.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적십자사는 직원의 채용, 승급, 승진, 전보, 휴직, 면직 및 파면 등의 인사결정 이외의 사항은 보충협약에 따른다.

2.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적십자사는 조합의 임원(2012. 9월 기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3.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노동조합

적십자사는 조합의 임원(2014.11월 기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4. 대한적십자사노동조합

적십자사는 조합의 임원(2013. 2월 기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5. 전국적십자사기관노동조합

적십자사는 조합의 임원(2012. 4월 기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6. 인천적십자혈액원노동조합



적십자사는 조합의 임원(2014.11월 기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7.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노동조합(신설 2021.10.21.)

적십자사는 조합의 임원(2021.10월 기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8.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노동조합(신설 2021.10.21.)

적십자사는 조합의 임원(2021.10월 기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20조(각종위원회 참석)

① 참여조합별 각종 위원회 참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0.21.)

1.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적십자사는 전 기관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본사 및 혈액관리본부(본부 소속기관 및 직원)에서 개최하는 승진심사위원회(2급 제외), 보통징계위원회, 특별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약무위원회, 장비(시약)심의위원회, 기념품선정위원회, 명예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조합(과반수 조합인 경우에 한함)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만, 3급 승진심사위원회는 1인으로 하고, 특별징계위원회는 조합원이 대상일 경우에 한한다.

2.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적십자사는 해당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전보에 한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3.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노동조합

적십자사는 해당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전보에 한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4. 대한적십자사노동조합

적십자사는 해당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전보에 한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5. 전국적십자사기관노동조합

적십자사는 해당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전보에 한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6. 인천적십자혈액원노동조합

적십자사는 해당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전보에 한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7.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노동조합(신설 2021.10.21.)



적십자사는 해당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전보에 한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8.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노동조합(신설 2021.10.21.)

적십자사는 해당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전보에 한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각 기관(소속기관 포함) 직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경우, 조합(각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인 참여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는 1인으로 한다.(개정 2013. 3.18.)

제21조(수습기간과 임시직의 사용제한) ① 적십자사는 임시직 및 시간제 노동자를 3개월 이상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반수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② 현재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규직으로의 대체 방안을 강구한다.

③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표창)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표창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방지과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과반수 조합에서 추천한 자(개정 2002. 9. 1.)

제23조(근무성적 평가제도 개선) <삭제 2016. 6.28.>

제24조(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본사가 일괄적으로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표준계약서 작성 시 과반수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특별승진제 채택) ① 적십자사는 5급 직원으로서 당해직급에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4급으로 특별승진케 한다.

② 제1항의 실시와 관련한 정원관리 등에 대해 적십자사는 별도 관리한다. 단, 이 경우 차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으며, 비보직 4급의 대우를 받는다.

(본조신설 2001. 7. 9.)

제 4 장 고 용 보 장

제26조(고용보장) ① 적십자사는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경영 합리화, 작업 방식 변화 등을 이유로 과반수 조합의 동의 없이 정원을 축소하지 않는다. 단, 직종별 결원 보충방법에 대해서는 협의 후 실시한다.

② 적십자사는 적십자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십자사의 정원 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직장내 성희롱 등 금지) 직장 내 언어적, 육체적 등의 성희롱, 폭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해 노사 공동 노력한다.(개정 2021.10.21.)

제28조(용역근절) 적십자사는 업무의 일부를 용역으로 전환할 경우 과반수 조합(각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인 참여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시행한다.

제29조(사업장의 휴, 폐업) ① 적십자사는 사업장의 휴,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과반수 조합(각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인 참여조합)과 협의 후 시행한다.

② 적십자사는 휴, 폐업 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전에 이를 과반수 조합(각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인 참여조합)에 통보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반수 조합(각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인 참여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제30조(교육훈련) ① 적십자사는 직원의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 도입,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이상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십자사가 부담한다.

제 5 장 임 금

제31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봉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봉급)과 제수당(업무수당, 위험수당, 장기근속수당, 출납수당, 전산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으로 하며,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다만, 직책보조비의 경우 상여수당 산정기준에서는 제외한다.(개정 2018.12.19.)

③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보수총액과 정기상여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하계상여금, 중추절상여금, 효도상여금, 연가보상비 및 실적평가급에 대하여는 산정일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을 12월로 나눈 것을 말한다.(개정 2018.12.19.)

제32조(임금인상 시기) 임금인상시기는 매년 1월로 한다.

제33조(단일호봉제) 전문직 직원의 단일호봉제를 위하여 임·단협 체결 후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한다.(개정 2008. 9.22.)

제34조(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가산을 소송 동일 적용) 적십자사는 2013년에 제기된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가산을 소송과 관련하여 최종 확정시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한다. 다만,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3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본조신설 2015. 6.17.)

제34조의2(통상임금 소송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임금·단체협약 제34조(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가산을 소송 동일 적용)의 통상임금 소송 최종 확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법정 지연이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소송 확정 이후 지급임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소요기일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금원의 실 지급 시기(기 퇴사 직원 임금분 포함)는 노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2.12.)

제 6 장 노동시간 및 휴일·휴가

제35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한다.(개정 2004. 8.17.)

② 통상근무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교대근무자는 가능한 주 2일 연속휴가가 되도록 한다.(개정 2004. 8.17.)

③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은 09:00-18:00로 한다.(개정 2004. 8.17.)

④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근무시간, 근무준비시간, 조회, 휴식, 청소, 교육,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을 통틀어 말한다.

제36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②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③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7조(유급휴일) 적십자사는 다음 각 항을 유급휴일로 한다.

① <삭제 2006.11. 7.>

② 공휴일

1. 관공서의 공휴일(개정 2006.11. 7.)

2. 노동절(5월 1일)

③ 기타 정부 또는 적십자사가 임시로 지정한 날

1. 대한적십자사 창립기념일(10월 27일)

제38조(경조휴가) 경조휴가는 아래표에 의한다.(개정 2019.12.12.)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출 산	배 우 자(처)	10
입 양	본인(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9조(공로연수) 정년퇴직을 할 직원은 퇴직예정일 이전으로 기산하여 30년이상 근무자는 6개월, 20년이상 30년미만 근무자는 5개월, 10년이상 20년미만 근무자는 4개월간의 공로연수 기회를 부여한다.(개정 2021.10.21.)

제40조(공가)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공가 처리한다.

- ① 질병검사에 응하는 소요일수
- ② 향토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일수
- ③ 민방위 훈련에 응하는 시간 또는 일수
- ④ 공무로 인한 법원, 검찰,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 기타 사유로 출두요구를 받았을 때 이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 ⑤ 천재지변, 기타 사고로 교통이 차단되었을 때의 시간 또는 일수
- ⑥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연 12일 이내(본조신설 2002. 9. 1.)
- ⑦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일수(신설 2014. 9.18.)

제41조(휴가의 취소) 비상재해가 발생한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단 허가한 휴가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잔여 일수에 대한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 9. 1.)

제42조(노조창립일 행사시 지원) 적십자사는 참여조합의 창립기념일 행사에 조합원 참여를 협조하고 시설 및 차량을 지원한다.

제43조(국고헌혈의집 근로시간) ① 국고헌혈의집 근로시간은 보충협약 및 노사합의서 등 노사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8년 말까지 정부기준(350일, 20시)에 의하고, 2009년부터는 재고상황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일요일(공휴일 포함)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협의 후 시행한다.(본조신설 2009. 2.12.)

② 적십자사는 국고헌혈의집에 공익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제43조의2(국고헌혈의집 근로시간) 적십자사는 국고헌혈의집의 토요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본조신설 2013. 3.18.)

제 7 장 복지후생 및 교육

제44조(자기개발에 대한 지원) 조합원 중 직·용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자기개발을 위해 어학, 컴퓨터 교육 등을 받고자 할 때 교육비를 지원한다.

제45조(주택자금 대출) 적십자사는 무주택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제45조의2(주택임차자금 대부) 적십자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인해 원거리지역전보직원의 경우 원거리 전보직원 주택·주택임차자금 대여 및 인사교류수당 지급지침에 따른다.(개정 2018.12.19.)

제46조(사내복지기금) ① 적십자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하며, 복지기금 출연 금액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사내복지기금은 노사동수로 구성된 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③ 사내복지기금의 용도와 운영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47조(육아휴직) ① 적십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육아휴직기간은 3년 이내(남성 직원도 동일)로 연장한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연장의 적용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직원에 한하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10.21.)

② 휴직자의 효력은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에 의한다.

③ 육아 휴직 시 휴직자의 대우는 대한적십자사 직원보수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휴직과 동시에 대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본조신설 2002. 9. 1.)

제48조(출장비 적용범위 확대) 적십자사는 여비운영규정(국내)의 규정에 의거한 출장비 지급 시 동일 목적, 장소, 시간의 출장의 경우 동행인에 대해 최상급 직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현혈업무수행과 관련한 기관 외 근무 등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01. 7. 9.)

제48조의2(출장비 지급기준) 적십자사는 출장비 지급 시 여비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12.19.)

제49조(직원복지 개선) 적십자사는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재해 외의 암 및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다.(본조신설 2004. 8.17.)

제50조(병원사업장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조건) ① <삭제 2009. 2.12.>

② <삭제 2009. 2.12.>

③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4대 보험, 건강검진, 출산전후휴가, 경조휴가, 공가, 유급휴일, 육아휴직, 병가를 적용한다.(개정 2013. 3.18.)

④ 이외의 근로조건 및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 대학학자금 대부는 제외한다. 다만, 자녀 학비보조비는 2018. 1. 1.부터 적용한다.(개정 2017.11. 2.)

제51조(혈액원사업장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조건) ① <삭제 2009. 2.12.>

② <삭제 2009. 2.12.>

③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4대 보험, 건강검진, 출산전후휴가, 경조휴가, 공가, 유급휴일, 육아휴직, 병가를 적용한다.(개정 2013. 3.18.)

④ 이외의 근로조건 및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 대학학자금 대부는 제외한다. 다만, 자녀 학비보조비는 2018. 1. 1.부터 적용한다.(개정 2017.11. 2.)

제52조(무기계약직원 근로조건) ①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총근로시간에 비례하여 4대 보험, 건강검진, 출산전후휴가, 경조휴가, 공가, 유급휴일, 육아휴직, 병가, 대학학자금 대부 및 자녀학비보조비(이외의 근로조건은 제외)를 적용한다. 다만, 연차 휴가산정과 관련하여 휴가산정 기산일은 무기계약직 임용일로 한다.(개정 2017.11. 2.)

② 제1항의 기산일은 2009. 1. 1.로 한다.

제53조(퇴직금 정산) 적십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18.)

제54조(식비) 적십자사는 2021년부터 식비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개정 2020.11.30.)

제55조(상조용품 지원) 적십자사는 상을 당한 근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직계존·비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에 한함)의 조사 시 상조용품을 지원한다.

제 8 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56조(안전보건 의무) 적십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9. 1.)

제57조(기준준수) 적십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안전 기준에 준하여 작업환경과 시설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본조신설 2002. 9. 1.)

제58조(건강진단 및 결과조치)

- ① 적십자사는 조합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거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조합원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건강진단 결과를 즉시 개별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존의 노동을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업무로 배치전환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 9. 1.)

제59조(업무상재해보상) 적십자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토록 하고 그 진료와 보상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관계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 9. 1.)

제60조(유족보상급여) 적십자사는 조합원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가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300일분(일시금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다만,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한다.)(개정 2016. 6.28.)

제 9 장 단 체 교 섭

제61조(교섭요구) 노사 중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있는 경우에 한함),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수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한다.(개정 2013. 3.18.)

제62조(교섭의무) ①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한다.(개정 2013. 3.18.)

②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때는 최소한 3일전에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교섭일의 연기는 요구한 일시에 7일 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

제63조(교섭대상) 단체교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책무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계된 인사경영의 일반사항
3.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4.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5.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6. 기타 노사가 단체교섭 대상으로 합의하는 사항

제64조(교섭위원) 교섭위원은 적십자사와 교섭대표조합의 쌍방 대표자를 포함하여 각 7인으로 한다.

제65조(간사선임) 적십자사와 교섭대표조합 쌍방은 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 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66조(자료제출 및 기밀누설금지) 적십자사와 교섭대표조합 중 일방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에 의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67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대표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8조(교섭위원 전임)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적십자사는 교섭 당일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한 교섭위원 전원 및 서기 1인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5. 6.17.)

제69조(산별 집단교섭) 적십자사는 조합(교섭대표노조가 산별노조인 경우에 한함)에서 산별교섭 요구 시 교섭방식, 교섭의제, 교섭구조 단일화 방안 등에 참여한다.(개정 2013. 3.18.)

제 10 장 노 사 협 의 회

제70조(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사업장 지원) 적십자사는 병원의 주된 환자가 의료보호 환자, 행려 환자, 빈민, 장애인 등임을 고려하여 병원사업문제를 시장경제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진정한 적십자사의 이념에 맞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① 적십자사는 경영개선(병원발전)계획 및 공공의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다.
- ② 각 병원은 병원사업의 경영개선(병원발전)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과반수 조합(각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인 참여조합)을 포함한 병원경영(병원발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본사는 필요시에 사안에 따라 병원사업국, 과반수 조합, 각 병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 ③ 적십자사는 병원 사업장에 대한 공공의료의 역할(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 보전, 무의탁·무료진료 환자 진료비 지원, 시설투자 및 장비 현대화)강화를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개정 2006.11. 7.)
- ④ 본사 병원사업 담당부서는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경영개선계획과 연계하여 병원지원방안을 강구한다.(개정 2010.12.14.)

제72조(혈액사업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 적십자사와 참여조합은 혈액수급이 어려운 경우(혈액보유현황 3.0일분 이하)에는 이의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11 장 노 동 쟁 의

제73조(사전통보)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쟁의 중 신분보장) 적십자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참여조합 집행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부서 이동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75조(출입보장) 적십자사는 쟁의기간 중 조합원과 상급단체의 간부 그리고 관련자의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6조(쟁의기간중의 채용금지 및 대체금지) 적십자사는 쟁의기간 중 해당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및 대체 할 수 없다.

제77조(쟁의중의 시설이용) 적십자사는 쟁의중이라도 다음 시설의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참여조합 사무실 및 부속시설
2. 조합원이 통상 이용하고 있는 각종 복리후생시설
3. 게시판
4. 강당

부 칙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 1. 1.부터 2022.12.31.까지(2년)로 한다.

- ① 다만, 제10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제9호, 제19조(인사원칙) 제7호 내지 제8호 및 제20조(각종위원회 참석) 제7호 내지 제8호는 2022. 1. 1.부터 시행(적용)한다.
- ② 제38조(경조휴가)는 2020. 1. 1.부터 시행(적용)하며, 시행일 이전까지는 종전 협약에 따른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개정과 동시에 시행(적용)한다.
- ③ 제39조(공로연수)는 2022. 1. 1.부터 시행(적용)한다.

제1조의2(경과규정) 본 협약의 시행일 이전에 적십자사와 참여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기관별 보충협약은 제외함)은 본 협약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본조신설 2013. 3.18.)

제2조(효력유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 후 3개월이 경과되어도 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신 협약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3조(기관별 보충협약) ① 기관별 보충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은 각 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교섭대표조합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는다.(개정 2013. 3.18.)

② 각 기관과 교섭대표조합은 본 협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기관별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임한다.

③ 기관별 보충협약 사항은 본 협약에서 위임되거나 누락된 사항으로 한다.

④ 본 협약서에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별 보충교섭 시 교섭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04. 8.17.)

제4조(보충협약의 효력)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재교섭)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이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 및 보충협약의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

제6조(갱신) <삭제 2013. 3.18.>

제7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8조(협약보관) 본 협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적십자사와 참여조합이 1부씩을 보관하고 1부는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한다.

제9조(시행시기) <삭제 2015. 6.17.>

제10조(중복 협약내용 삭제) 본 협약서에 협약된 내용이 기존 기관별 보충협약서에 협약되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한다.(본조신설 2004. 8.17.)

제11조(협약조항 유지) 적십자사는 단체협약, 임금협약 개정 시 교섭대표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문구를 조정한다.(본조신설 2009. 2.12.)

별도협약서

제1조(준용) 본 별도협약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혈액원사업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십자사는 2013년 1월 현재 혈액원 사업장에서 대체인력 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상 계속 근로한 비정규직(초단시간 제외)에 대해 정원확보 후 심사제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다.
(본조신설 2013. 3.18.)

제3조(전직기회 부여) ① 적십자사는 기능직 사무보조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2018년부터 매 2년마다 사무분야 7년 이상 근무한 기능직 사무보조직(사무보조원 및 사무보조기능원)에 대해 사무직(7급)으로의 전직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20.11.30.)

② 적십자사는 고용원 사무보조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협약 체결일 현재 사무분야 고용원으로 근무하는 직원 전원에 대해 2015년(2016. 1. 1. 임용)부터 5년 이내(2020. 1. 1. 임용) 기능직(사무보조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며, 2014년도말 이전에 전직기준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각 기관에 통지한다.

③ 적십자사는 혈액관리본부 기획조정팀-1938(2015.12.19.)호, 「혈액원 전산인력 전환 배치 및 업무분장 시행계획 통보」 및 기획조정팀-2457(2017.12.26.)호, 「혈액원 전산업무체계 개편 후속조치 시행」 문서에 근거하여 사무(보조)업무로 전환되어 7년 이상 근무한 前 전산담당자(기술직)에 대해 사무직(7급)으로의 전직 시험을 실시한다. 전직 시험은 제1항의 기능직 사무보조직 전직 시험에 포함하여 실시한다.(신설 2020.11.30.)

④ 제3항의 전직대상자 명단은 노사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0.11.30.)

제4조(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적십자사와 교섭대표조합은 노사관계 선진화(시간외 근로 단축, 회계 통합에 따른 근로조건 표준화, 효율적인 근무형태 변경 등)를 추진하기 위한 노사협의체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본 협약 체결일 이후 7월 1일부터 운영하며, 노사협의체 운영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6. 6.28.)

제4조의2(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적십자사와 교섭대표조합은 4급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한다.(개정 2021.10.21.)

제5조(동의 간주)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신설 및 개정된 조항에 대해서 우리 사 규정 및 지침 개정에 대해 교섭대표조합은 동의하며, 동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2.10. 7.)

제6조(토·일요일(공휴일 포함) 휴게시간 보장 및 근무시간 제외) 적십자사는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근무 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시간 산정 시 제외하여 시행한다. 다만, 노사간 논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한다.(개정 2016. 6.28.)

제7조(인력충원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적십자사와 교섭대표조합은 '공공병원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9.18.)'에 따라 노사 공동의 T/F를 구성하여 2017년 12월 말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17.11. 2.)

제8조(생리휴가 관련 제도 개선) 적십자사와 교섭대표조합은 생리휴가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사 공동으로 노력한다.(본조신설 2017.11. 2.)

제9조(감사 지적사항 개선) 적십자사와 교섭대표조합은 보건복지부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각 기관별 보충협약에도 불구하고 2018. 1. 1.자로 전 기관의 장기근속자 포상금 및 퇴직자 위로금(전별금)을 폐지하고, 전 기관의 경조사비를 2018. 1. 1.부터 전당 5만원(업무추진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한다.(본조신설 2017.11. 2.)

제10조(특근시간 산정기준) 적십자사와 교섭대표조합은 혈액회계 소속기관의 특근시간 산정기준을 2018. 1. 1.부터 10분 단위로 통일한다. 다만, 각 기관별로 충분한 합의를 거쳐 시행한다.(본조신설 2017.11. 2.)

제11조(헌혈의집 통합 콜센터 설치) 적십자사는 헌혈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와 헌혈의집 근무자 업무 경감을 위해 통합 콜센터(자동 응답 시스템) 설치를 추진한다.(본조신설 2020.11.30.)

제12조(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경과조치)(본조신설 2021.10.21.)

- ①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은 2022년 1월 1일 임금피크제 전환 직원부터 적용하며 경과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최초 승급 기산일 변경은 2022년 입사자부터 적용하며 경과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2021년도 산별중앙교섭 합의사항 준용) 다음 각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도 산별교섭 합의사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10.21.)

①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1. 사용자는 코로나19 등 의료재난에 준하는 감염병 발생 시 긴급 대응팀을 구성·가동하며, 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2. 사용자는 업무상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각각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감염병에 감염된 자는 완치 시까지, 감염병 증상으로 진단·의심되어 '검사 중인' 자는 진단 결정시까지, 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 명령을 받은 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공가를 부여한다.

나. 감염병에 감염된 자가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을 경우, 임금 차액분은 기관별 합의에 따른다.

3. 사용자는 코로나19 방역업무(소독과 출입 통제 등)를 위한 인력은 노사협의를 통해 별도로 배치·운영한다.

4. 사용자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격리 중 환자의 이동과 병상 청소업무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해 방호복 착용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한다.

② 비정규직 문제 해결

1. 사용자는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관별 단체협약에 따른다.

2. 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계약 기간 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 단, 병가·휴가·휴직 대체인력과 일시적·간헐적 업무는 제외한다.

3. 사용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처우 개선,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사용자는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며, 이를 계약조건으로 한다.

나. 사용자는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1인당 계약단가를 낮추지 않으며, 기존 임금조건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다. 사용자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원·하청과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개최하여 직원 안전 및 노동환경 관련 대책을 수립, 조치한다.

제14조(2021년도 산별중앙교섭 적용) 적십자사는 2021년도 산별중앙교섭 합의안에 대해서는 기관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21.)

제14조의2(2022년도 산별중앙교섭 적용) 적십자사는 2022년도 산별중앙교섭 합의안에 대해서는 기관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 7.)

제15조(혈액수급 안정화 및 국고헌혈의 집 운영)(본조신설 2021.10.21.)

- ① 교섭대표조합과 보건복지부는 혈액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혈액수급 안정화와 혈액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한다.
- ② 헌혈센터 일일 운영시간은 헌혈센터 신설 시기, 채혈량, 적정 인력 배치 및 운영의 효율성, 헌혈센터 집중 분포, 헌혈자 사전안내 조치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결정, 보건복지부 협의 후 실시한다.
- ③ 헌혈센터의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은 18시까지로 한다.
- ④ 위 합의한 사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자체헌혈의 집 운영) 자체헌혈의 집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상 헌혈의 집은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21.10.21.)

제17조(핸드폰 지원비) 2023년 1월 1일부터 간호팀 근무편성 담당직원, 품질관리팀 간호·보건행정 업무 담당직원, 권역 및 혈액원 수급 담당직원에게 핸드폰 지원비를 월 30,000원 지급한다.(본조신설 2022.10. 7.)

제18조(당직근무자 조식비) 2023년 1월 1일부터 야간 당직근무자 조식비를 1야당 7,000원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야간 당직근무자(혈액원 및 공급소, 혈장분획센터)로 한다.(본조신설 2022.10. 7.)

임금협약서

적십자사와 교섭대표조합은 2022년도 적용 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장 직원 및 고용원

제1조(기본급) 기본급(봉급)은 모든 직종 및 직급에 대해 2021년도 임금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급(봉급)으로 환산하여 정액으로 인상한다.(개정 2022.10. 7.)

제2조(상여금) ① 정기상여금은 매월 20일에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 기준일 현재 해당 월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2.19.)

② 효도, 하계, 중추절 상여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률은 설, 7월, 중추절에 통상임금으로 각각 50%씩 지급한다. 또한, 근무기간이 당해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18.12.19.)

제3조(가계보조비) <삭제 2018.12.19.>

제4조(실적평가급) ① 실적평가급은 결산종료 익월 이후(5월 이전)에 해당기관의 경영 개선 및 사업실적 등 성과주의에 기초한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기관별로 지급률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9.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장(소속기관장)은 재정형편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14.)

③ 제도 변경에 필요한 관련 규정 개정에 과반수 조합은 동의하며 동의(협의 포함)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삭제 2015. 6.17.>

제5조(수당 등) ①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7.11. 2.)

5년 이상~10년 미만	60,000원
10년 이상~15년 미만	70,000원
15년 이상~20년 미만	90,000원
20년 이상~25년 미만	120,000원
25년 이상	140,000원

②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기타 지급연령 및 지급기준 등은 '직원보수운영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11. 2.)

1. 배우자 40,000원
2.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 20,000원
3. 첫째 자녀 20,000원(개정 2017.11. 2.)
4. 둘째 자녀 60,000원(개정 2017.11. 2.)
5. 셋째 자녀 이후 100,000원(개정 2017.11. 2.)

③ (업무수당) 업무수당은 직원보수운영규정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2호의2]의 규정을 따르며 본사, 본부, 의료원 직원에 대하여 업무수당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직원 및 고용원 운영규정 [별표 제1호] 책임보직기준표에 해당하는 직원,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및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본사·본부·의료원으로 지정된 직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 7.)

④ (위험수당) 위험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22.10. 7.)

지 급 대 상	지급한도액(원)
1. 본·지사 ○ 기관실, 전기실 근무자	20,000
2. 병원 ○ 결핵과, 정신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및 임상병리과 근무의사	40,000
○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 정신과 병동, 영상의학과(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약제·조제과(실), 중앙공급실, 주사처치실 및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근무자, 건강검진실(과), 외래 및 병동근무자, QPS실, 감염관리실, 공공의료협력(사업)팀, 진료협력실, 간호팀, 교육센터, 사회사업실, 응급차량 운전기사, 장례지도사, 안전·보건관리자	20,000
○ 기관실, 전기실, 특수세탁 종사자, 환경기사	
○ 영양사, 조리원, 취사원	
○ 원무팀 진료비 접수·수납업무 종사자 ※ 원무팀 진료비 접수·수납업무 종사자는 환자 및 보호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에 한한다.	
3. 혈액원 ○ 의 사	40,000
○ 연구원	20,000
○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헌혈차량 운전기사, 공급차량 운전기사, 헌혈안내원	20,000
○ 기관실, 전기실 근무자	20,000



- ⑤ (기술직 주임 수당) 기술직 주임수당은 매월 26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06. 1.13.)
- ⑥ (학비보조비) 자녀 학비보조비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조합원의 경우 지침에 따라 자녀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 6.28.)
- ⑦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8.12.19.)

대 상	월 지급액
1급, 별정직	140,000
2급, 연구직(부장급 연구원)	130,000
3급, 연구직(팀(과)장급 연구원)	120,000
4급, 연구직(선임연구원), 기술직 및 기능직 15년 이상	110,000
5급, 연구직(연구원), 기술직 및 기능직 10년 이상	100,000
6급, 기술직 및 기능직 10년 미만	90,000
7급, 기술직 및 기능직 5년 미만	85,000
고 용 원	80,000
의무직 팀(과)장급 이상	140,000
의무직 부과장 · 혈액원 제조관리부장 및 기타 의사	115,000

- ⑧ (연가보상비) 전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매년 1월 15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 1.13.)
- ⑨ (교통보조비 지급) <삭제 2018.12.19.>
- ⑩ (직책보조비) 직원 및 고용원 정원운영규정 [별표 제1호] 책임보직기준표에 해당하는 직원이 직원운영규정 제26조의3에 해당되는 경우 1~4급 비보직자 기준에 해당하는 직책보조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10. 7.)

제6조(처우개선비) 15년 이상 근속한 기술직원, 기능직원, 고용원에 대하여 월50,000원 상당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다만, 임금협약 제5조 제5항 적용자는 제외한다.(개정 2009. 2.12.)

제7조(협약의 준용) 교섭의 절차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협약을 준용한다.(개정 2013. 3.18.)

제8조(직원복지카드) ① <삭제 2018.12.19.>

- ② <삭제 2018.12.19.>
- ③ <삭제 2018.12.19.>

제9조(임금인상 방식) 2015년부터 임금인상 방식은 5년간(2015~2019년)은 정률, 6년간(2020~2025년)은 정액(짝수년도)-정률(홀수년도)방식을 교대로 적용한다.(본조신설 2014. 9.18.)

제10조(시행시기) <삭제 2015. 6.17.>

제11조(2015년도 임금인상률 조정) <삭제 2015. 6.17.>

제 2 장 무기계약직원

제12조(임금) 무기계약직원의 임금은 기준금액을 정규직 전환자 직급(간호직종 및 보건직종 7급, 그 외 기타직종은 고용원)의 초호봉급 기준 총액의 100%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 총액을 상회하는 무기계약직원의 경우 무기계약직원운영규정 부칙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약 제1조를 적용한다.(개정 2012. 2. 3.)

제12조의2(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비) 무기계약직원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비는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7.11. 2.)

제13조(직원복지카드) ① <삭제 2018.12.19.>

② <삭제 2018.12.19.>

③ <삭제 2018.12.19.>

제 3 장 비정규직원

제14조(임금) 비정규직원의 임금은 사회적 형평성 및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해당직종의 초호봉 기준 총액으로 한다.(개정 2021.10.21.)

제14조의2(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비) 비정규직원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비는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7.11. 2.)

제15조(직원복지카드) ① <삭제 2018.12.19.>

② <삭제 2018.12.19.>

③ <삭제 2018.12.19.>

부 칙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수당 등)의 업무수당, 위험수당, 직책보조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한다.

제2조(협약보관) 2006년도 단체협약 부칙 제8조(협약보관)를 준용한다.

제3조(부속합의서) <삭제 2006.11. 7.>

2022. 10. 7.

대한적십자사
회 장 신희영 (신희영)

교섭대표노조(보건의료산업노조)
위 원 장 나순자 (나순자)



사측 교섭위원

노측 교섭위원

대표위원	이재승	이재승
대표위원	차정수	차정수
대표위원	전대식	전대식
위원	목성균	목성균
위원	원왕희	원왕희
위원	류춘배	류춘배
위원	김대성	김대성
위원	김상용	김상용
위원	김동현	김동현

대표위원	정연숙	정연숙
위원	박종구	박종구
위원	김오기	김오기
위원	김두수	김두수
위원	김수현	김수현
위원	강귀분	강귀분
위원	임규섭	임규섭
위원	진병록	진병록
위원	강현근	강현근

